서울특별시 마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2. 1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년 1월 15일 마포구청장
나. 회부일자 : 2016년 1월 21일
다. 상정일자 : 제201회 임시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(2016년 2월 1일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창기황

가. 제안이유

○ 「상위법인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규정된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○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3조의2)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3월 16일까지로 정함

○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(안 제7조제3항)

- 연임 횟수를 정하지 않은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

○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신설(안 제7조의2)

-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및 해촉 규정 마련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김은모)

○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(2016. 3. 16)이 만료되어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기금의 관리·운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,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보다 공정한 기금 심의 및 운용을 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)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안 제7조제3항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중 위촉직위원의 임기를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고,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위촉해제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회 위원 구성 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심의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음

○ 또한 우리 구 조례에서 존속기한의 기간 설정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,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존치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또한 본 조례안 부칙 제1조(시행일)에서 이 조례는 2016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같은 조례 제3조의2(존속기한) 중 "5년"을 "2021년 3월 16일"로 정함은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상위법인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 및 같은 법 제7조 규정에도 적합하며, 그 밖의 조문들은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